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73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성원 · 김은혜 · 이현승  
박정하 · 안철수 · 김정재  
정점식 · 김선교 · 정동만  
박충권 · 고동진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국가 무역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B2B 중심의

무역 절차 전자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을 포괄·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결제·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및 제8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수출”이란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절차, 대금결제, 물류·배송 등 무역거래의 실질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온라인유통플랫폼”이란 온라인수출 또는 전자무역을 활용되는 인터넷 기반의 거래중개시스템으로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매개하거나 이를 위한 결제, 물류,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온라인수출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수출 현황, 산업 동향,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등에서”를 “,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등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조의2(온라인수출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수출 현황, 산업 동향,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온라인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  
-----  
-----  
-----,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등에서-----  
-----  
-----.

② ~ ⑤ (현행과 같음)